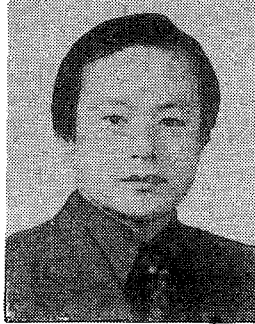


廢棄物 規制의 合理化



具 然 昌
(慶熙大 法大學長·法博)



오늘날의 현저한 都市化·産業化와 消費의 大量化傾向과 함께 廢棄物의 量이 急増함에 따라 그 處理는 中대한 社會的問題로 등장하게 되어 폐기물문제는 大氣汚染과 水質汚染에 버금가는 「第3의 公害」문제로서 부각되었다. 廢棄物의 處理如何에 따라 環境衛生에 영향을 줌은 물론, 環境汚染의 惡化에 직접·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.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適正한 處理에는 經濟的·社會的·政治的·技術的인 어려움이 뒤따르게 마련이다. 따라서 世界各國에서는 廢棄物의 適正處理 및 이의 실현을 위한 體制의 定立을 강구함에 부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.

우리 나라에서도 일찌기 1961년에 汚物을 위생적으로 處理하여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을 기할 目的으로 汚物清掃法을 제정하였었다.

그러나 同法의 目的規定에서 보는 바와같이 그 法의 性格은 이른바 環境法的인 것이 아니고 衛生法的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었다. 그럼에도 環境問題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었던 立法當時 이후 한 동안 汚物清掃法은 우리 나라에 있어 廢棄物處理에 관한 規制立法의 根幹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.

그러나 汚物清掃法은 그 內容이 未備·不完全하여 그 規制의 對象이나 方法이 制限되어 있었기 때문에 70年代에 들어서면서 廢棄物處理問題가 점차 심각화하기 시작하자 汚物清掃法으로

